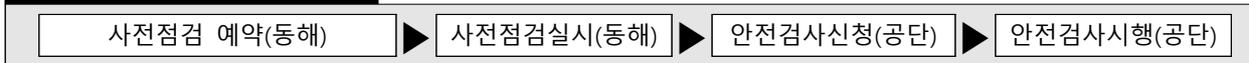
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에 따른 사전점검 안내문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에 대하여 동해기계항공(이하"동해") 장비를 소유하신 고객은 **검사대상 유, 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안전검사를 신청**하여야 합니다.
3. 안전장치의 이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안전검사 부적합으로 사용중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안전검사 부적합으로 인한 사용중지명령 및 재검사 등에 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, 우리 회사에서는 **사전점검을 무상으로** 실시하오니 **산업안전공단에 안전검사 신청 전 각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반드시 점검**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안전장치 파손 등 수리가 필요 할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)

안전검사 신청 절차



사전 점검 미 시행 후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



6. 2016년 10월 28일 까지 등록차량에 대하여 2017년 10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필히 실시해야 하므로 **반드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안전검사를 신청**하여야 합니다. (안전검사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.)

※ 검사대상여부 확인방법

가.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차량 - 자동차등록증 내용으로 확인

자 동 차 등 록 증					
계	호	최초등록일 2016년 10월 19일			
①자동차등록번호		②차 종	소형 특수	③용도	자가용
④차 명	동해고소작업차	⑤형식및모델연도	DHS950L-02	2016	
⑥차 대 번 호		⑦원 동 기 형 식	D4CB		
⑧ 사용 본 거 지					

- 차종확인 : "소형특수" 또는 "중형특수"로 표기된 모든 차량
- 차명확인 : "동해고소작업차-○○○○" 또는 "동해절연고소작업차-○○○○"
- ※ 주의사항 : 차종이 **화물자동차로** 등록되어 있고, 고소작업을 위하여 버킷을 설치한 **구조변경(튜닝)차량**은 현행법(자동차관리법)상 "**이동식크레인**"(아래 "나"항에서 대상 확인)에 해당되므로 **고소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.**

나.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대상차량 - 장비 모델명으로 확인

- 너클크레인 : Alpha 5000, Alpha 12000, Alpha 13000, Alpha 15000
- 스틱크레인 : DHS 706, DHS 203

위 대상 차량에 속하지 않는 장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의 있을 경우 각 지역 서비스센터 또는 본사로 문의바랍니다.

※ 지역별 연락처

사업소명	연락처	사업소명	연락처	사업소명	연락처
본사	041-851-1500(代)	광주사업소	062-954-9030	강릉사업소	033-647-7702
기흥사업소	031-281-2951	칠곡사업소	054-972-4512	청주사업소	043-269-0192
인천사업소	032-552-3325	경주사업소	054-726-2627	사천사업소	055-854-1153
남양주사업소	031-528-8952	김해사업소	055-321-3303	제주사업소	064-713-1993